

10 취업노동자 「병가 소득손실보상금」 (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)

경기도와 파주시는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조기 진단검사를 위한 취업노동자 「병가 소득손실보상금」을 지급합니다.

【지급방법 및 신청서류 안내】

■ 지급조건 : ① 파주시민이고 ② 취업노동자로 ③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④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 ⑤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 신청가능합니다.

«취업노동자(단기간·일용직,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등) 지원 대상 (예시)»

- ① 단시간노동자 : 편의점, 음식점, 주유소 등 단기알바, 학원강사, 학원버스운전자 등
- ② 일용직노동자 : 건설노동자, 행사도우미, 가사도우미 등
- ③ 특수형태노동종사자 : 택배기사, 대리기사, 킥서비스, 학습지도사, 보험설계사, 건설기 계운전원, 골프장캐디, 대출모집인, 신용카드모집인 등
- ④ 요양보호사
 - ※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」 제125조(‘20.7.1.시행기준)에 해당되는 특수형태노동종사자 (단, 기간제, 파견, 용역 노동자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)

※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‘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’을 방문 또는 이용한 분에 한해 무증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

- 지원내용 : 1인당 1회 23만원(지역화폐 파주페이 지급)
- 사용기한 : 사용승인일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(단, '21년 .2월 20 일괄사용 마감)
- 신청기간 : 6월 15일(월)~12월 24일(목)까지*기간연장 *예산소진시 조기종료
- 신청방법 : 이메일 또는 우편, 방문(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 자제)
 - ※ 이메일 : pjm0626@korea.kr, altarimoo@korea.kr
(전송 후 유선 확인바랍니다)
 - ※ 우 편 : 파주시 시청로 50,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(우:10932)
 - ※ 유선문의 : 031.940.5262

■ 신청서류 ①신청서 ②신분증(사본) ③ 주민등록 초본 ④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⑤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약약서 ⑥ 취업노동자 자격확인 입증서류 1부 (근로계약서, 사본 또는 용역·위촉·위수탁·대행계약서 사본)

※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·위촉·위수탁·대행계약서가 없는 경우 그 외 입증자료 (단시간노동자) 사업주확인서, 출퇴근 기록부 등 (일용직노동자)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,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, 퇴직금적립내역서 등 (특수형태 노동종사자) 노무·용역·제공 사실 확인서, 대리운행내역서, 산재보험 자역이력내역서 등

Q&A

❏ 취약노동자란?

☞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, 일용직노동자, 그리고 택배기사·대리기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노동종사자를 의미합니다.

❏ 지원배경은?

☞ 특수형태노동종사자 분들은 몸이 아파도 쉽게 일을 놓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경기도와 파주시는 관내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23만원의 병가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.

❏ 지급대상은?

☞ '20. 6. 4.(목)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영주권자, 결혼이민자로 되어 있는 분으로

①주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②일용직노동자 ③특수형태노동종사자 ④요양보호사로 기간제, 파견, 용역 근로자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및 일용직노동자에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. 단,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후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경우에만 지급됩니다.

※ 코로나19 검사비 지원대상별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 유무

구 분	확진자	의사환자	조사대상 유증상자		
			해외 방문력 있을 경우	집단발생 역학적 연관성 있을 경우	의사소견 있을 경우
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급대상	X	X	○	○	○

- * 단, 조사대상 유증상자 중 자가격리 의무대상자일 경우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제외
- *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통보한 ‘확진자 방문 다중 이용시설’을 방문 또는 이용한 분에 한해 무증상자도 지원대상에 포함

❏ 지급대상자가 근무한 기간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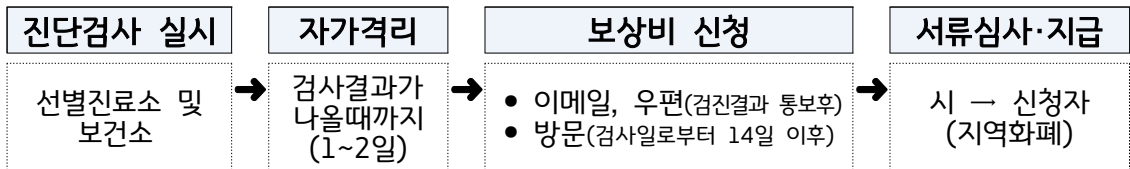
☞ 코로나19 진단검사 시점에 단시간노동자, 일용직노동자, 특수형태노동종사자,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경우 가능합니다.

▣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내용은?

☞ 코로나19 검사실비와 검사기간 동안의 소득손실보전차원에서 노동자 1인당 23만원(진료비 등 실비 3, 보상비 20)이 지원되며,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
▣ 지급방식은?

☞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며,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 하에 지급합니다.



▣ 코로나19 확진시에도 지급 가능한가요?

☞ 코로나19로 확진시 생활지원금이 지급되므로, 이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검진결과 음성인 경우에만 지급되며, 이는 검진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한 보상금이기 때문입니다.

▣ 2회 이상 신청이 가능한가요?

☞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지급됩니다.

▣ 지급기준일은?

☞ 경기도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계획 발표일인 6.4.(목)부터 지급신청일 까지 파주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
| 지급방법은?

☞ 6.15.(월)부터 우편 및 이메일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,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격리 이행 후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잠복기를 감안 진단검사일로부터 14일 이후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.

※ 이메일 : pjm0626@korea.kr, altarimoo@korea.kr(전송 후 유선 확인바랍니다)

※ 우 편 : 파주시 시청로 50,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(우:10932)

※ 유선문의 : 031.940.5262

| 사용가능 기간은?

☞ 사용가능 문자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 가능합니다.

단, 당초 12월 31일 일괄 사용을 마감 예정이었으나 신청기간 연장('20. 12. 24)에 따라 2021년 2월 20일까지 사용을 마감일을 연장합니다.

| 대리신청 및 대리수령도 가능한가요?

☞ 당사자 신청이 원칙이나, 신청서류만 갖춘다면 누구나 대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새로 발급되는 지역화폐 수령은 본인만 가능합니다.

|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한가요?

☞ 네.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은 개인단위 신청으로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

| 외국인도 대상이 되나요?

☞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단시간노동자(주 40시간 미만) 일용직노동자, 특수형태노동종사자에 해당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합니다.